

Yeosu Web Contents

2024년 04월 19일 00시 14분



목차

목차	2
등록현황	3
변경신고 대상 광고물 등	3

변경신고 대상 광고물 등

2014.04.17 조회수 613 등록자 박종일

관리번호	전라남도 여수시-2013-0025
담당부서	도시디자인과
상위법령	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
조례	여수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4조
유형	3호 - 기준설정(기준고시 등)
법령공표일	신설규제
존속기한	2013-05-03
규제시행/폐지일	2013-05-03
규제내용	제4조(변경신고 대상 광고물 등) 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 등을 제외하고는 시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. 1. 타사광고(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 등과 옥상 간판을 말한다)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 2.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 3.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 중 광고물 등의 규격, 사용자재, 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

목록

이전글

전라남도 여수시-2013-0024

다음글

전라남도 여수시-2013-0026

Yeosu Web Contents



여수시